#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56호

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ST나눔공헌단), 02-970-6043

제정 2012. 3. 1. 개정 2012. 10. 9. 전부개정 2019. 9. 30. 일부개정 2021. 8. 31. 일부개정 2023. 8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에 의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(이 하 "공헌단" 이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, 8, 1>

제1조의2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3. 8. 1.>

- 1. 사회봉사활동: 자발성·공익성·이타성·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<신설 2023. 8. 1.>
- 2. 사회봉사자: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, 직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으로서 제1호를 행하는 자 <신설 2023. 8. 1.>

제2조(기능) 공헌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3. 8. 1.>

- 1. 국내외 대외 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와 섭외 활동
- 2.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 수립

- 3.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
- 4. 사회봉사활동의 평가
- 5.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
- 6.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
- 7. 학내 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
- 8.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
- 제3조(조직) ① 공헌단에는 ST나눔공헌단장(이하 "단장" 이라 한다)과 부단장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 8. 1.>
- ② 공헌단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생지원과 소속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1.>
- ③ 공헌단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생은 공헌단 소속 사회봉 사자로 본다. <신설 2023. 8. 1.>
- ④ 단장은 제3항의 사회봉사자를 제4조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8. 1.>
- 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공헌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과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대외협력본부장, 부 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서 그 밖의 위원은 공헌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 는 교수, 직원, 학생 각 2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 8. 1.>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되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

-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,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심의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원 중 관련 부서장이 되고, 해당 분과의 봉사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- 1. 교수분과 : 교수의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
- 2. 직원분과 : 직원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- 3. 학생분과 : 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공헌단의 기본운영계획
- 2. 공헌단의 사업 계획
- 3. 공헌단 규정의 개정, 폐지
- 4.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
- 5. 그 밖에 공헌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구성 및 가입) ① <개정 2012. 10. 9.> <삭제 2023. 8. 1.>

- ② <개정 2012. 10. 9.> <삭제 2023. 8. 1.>
- ③ <삭제 2023, 8, 1,>

제7조(봉사활동) ① <삭제 2023. 8. 1.>

- ② <삭제 2023. 8. 1.>
- ③ <삭제 2023. 8. 1.>

제8조(봉사활동의 영역) 사회봉사 활동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내: 지역사회 기여 공헌 활동,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봉사 활동 등. 단, 종교 단체는 제외하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활동은 인정

- 2. 국외: 해외봉사활동 등
- 제9조(사회봉사기관 인정요건) ① 공헌단이 인정하는 사회봉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23. 8. 1.>
  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<개정 2023. 8. 1.>
  - 2.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사기관에 포함되는 국내외의 봉사단체<개정 2023. 8. 1.>
  - 3.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, 비정치적 단체, 기업체(단체) 산하복지재단<신설 2023. 8. 1.>
  - 4.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센터(VMS) 인증기관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 <신설 2023, 8, 1.>
  - 5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<개정 2023. 8. 1.>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- 1. 각종 종교,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
  - 2. 소속 학부(과)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
- 3.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(장학금은 제외한다)를 받는 경우 <개정 201</li>2. 10. 9.>
- 제10조(봉사활동 교과운영) ① 봉사활동 교과목명은 봉사활동(1), 봉사활동(2)로 하며,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3. 8. 1.>
- ② 신청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, 수강신청 제한 학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8. 1.>
- ③ 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.>

- ④ 봉사활동 기간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각 학기 단위로 하며,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학기 내에 소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.
- ⑤ 학점이수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이론교육을 포함한 교육 4시간 이상, 봉사활동 30시간 이상, 결과보고 1시간 이상, 총 35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9.><개정 2023. 8. 1.>
- ⑥ 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봉사활동은 해당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9.>
- 제11조(봉사활동 신청) ① 공헌단에 가입한 후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기간 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12조(봉사 대상기관 배정) 봉사 대상기관 배정은 지원자가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소수의 봉사 대상기관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공헌단에서 재배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전교육) ① 공헌단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학기 초마다 실시하며, 신청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② 사전교육은 2시간으로 하며,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한다.
- ③ <삭제 2023. 8. 1.>
- 제14조(담당교수) 봉사활동 교과목 담당교수는 단장이 위촉하며,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질 높은 사회봉사 및 봉사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.>
- 1. 학생의 사회봉사 계획 및 이수 인정 확인 업무 <개정 2023. 8. 1.>
- 2. 학생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및 성적부여 업무 <신설 2023. 8. 1.>

- 3. 봉사활동 사전교육, 중간점검, 기말보고회(평가회) 실시 <개정 2023. 8. 1.>
- 4. 봉사 대상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 점검 및 활동 내용 확인을 진행하고, 봉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 대표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<개정 2023, 8. 1.>
- 5.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 대상기관 신규 개발<개정 2023. 8. 1.> 제15조(성적처리) ① 봉사활동 확인 및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담당교수가 실시한 다.<개정 2023. 8. 1.>
  - ②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각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학점을 "S"(합격)로 처리하고, 단위 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이수하지 못하면 "U"(불합격)로 처리한다. <개정 2 023, 8, 1.>
  - ③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, 졸업 이수 학점으로 최대 2학점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. 다만, 봉사활동 성적을 "U"(불합격)로 처리 시 성적 장학금은 수혜가 불가하다.<개정 2023. 8. 1.>
  - ④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U"(불합격)로 처리한다. <신설 2023. 8. 1.>
- 1. 사전교육에 불참한 경우
- 2. 봉사활동시간이 미달된 경우
- 3. 봉사대상기관의 출석 및 평가확인서에 "F"를 받은 경우
- 4. 다음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#### 봉사활동(1) 또는 봉사활동(2)

- 봉사활동 계획서
- 활동보고서(결과보고서)
- 기관평가서(출석 및 평가확인서)
- ⑤ 담당교수는 봉사활동 종료 후 성적 제출기한 내에 성적을 교무처로 송부한다.

### <개정 2023. 8. 1.>

제16조(인증서 발급)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발급한다.

제17조(활동 장려) ① 단장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 높인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우수봉사자 추천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봉사자 추천서에 의한다.
- ③ 봉사활동의 결과는 분과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각종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칙(제23호, 2012. 3. 1.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(제144호, 2012. 10. 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91호, 2019. 9. 3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29호, 2021. 8. 3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756호, 2023. 8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삭제 2023. 8. 1.>

## [별지 제2호서식]

봉사활동 계획서								
학부(과・	전공)						학 년	
성	명			학 번			휴대전화	
e - ma	il							
봉 사 활	동	기관명					연락처	
7]	관	주 소						
지 원 동	기							
및								
목	적	H 0 = =	2) 43 . 1		30 71	1 22	V = 2 = 1	-1 -1 A VIAL-1-1
								할 것을 서약합니다 고려되다
					만족도를 :			
• • •	,				., . , .			키지 않는다 l 책임을 진다
•					본인의 활·	,		1 색임들 선다
4. Em 9	× 0	<u> </u>		<u>시의 단대</u> 20 년	<u> </u>	<u> </u>	日工七勺	
		학 생		20 2	_	_	명 또는 인	)
※ 본란은	- 봉기			 작성하여	주시기 바			,
					. ( )학			 읔 승인함
   봉사기간					· · · · · ·	2		
		20	•		~		0 .	•
봉사종류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
담당자(직·성명) : (인)								
기 관 장 : (인)								
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장 귀하	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## 봉사활동 확인서

## ■ 학생 작성란

학부(과·전공)		학 년	
성 명	학 번	휴대전화	

## ■ 봉사기관 작성란

기 관 명	연 락 처	

## [봉사활동 내용]

순번	월/일	활동시간	주요활동내용	순번	월/일	활동시간	주요활동내용
1		( )시간		8		( )시간	
2		( )시간		9		( )시간	
3		( )시간		10		( )시간	
4		( )시간		11		( )시간	
5		( )시간		12		( )시간	
6		( )시간		13		( )시간	
7		( )시간				총 (	) 시간

## [봉사활동 평가]

 평 가 내 용	A+	A	В	С	F		
평 가 내 용	(최우수)	(우수)	(보통)	(미흡)	(기대이하)		
봉사학생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활동하였음							
봉사학생이 봉시수혜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였음							
봉사학생이 봉사기관의 업무규칙을 준수하였음							
※ 위의 3개 평가 내용 중 1개 이상이 F일	경우는	성적 미취	득으로	평가 처	믜됩니다.		
※ 평가자 의견(우수봉사자인 경우 추천서 첨부) :							

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담당자(직·성명): (인)

기 관 장 : (인)

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장 귀하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봉사활동 보고서							
학부 (과·전공)		학 년					
성 명	학 번	휴대전화					
e - mail		·					
봉 사 활 동	기관명	연락처					
기 관	주 소						
	< 본인이 봉사활동 후 느낀 점 등 소?	남을 기술한다 <b>&gt;</b>					

[별지 제5호서식]

# 우수봉사자추천서

	학년도		<u>학기</u>							
추천자 (기관 담당자)			무:				성	명:		(인)
추 천	성	명				학	번			
대상자	전공(학과)									
	기	관 명								
	프로그램명									
사 회 봉 사 활 동	봉 활 내	사 동 용								
	활동	·기간		년	월	일 ~		년	월	일
	봉시	-시간	총		시간					
추 천 사 유										

위 학생을 우수봉사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약

기 관 명: (직인)

### 유의사항 :

- 1. 추천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졸업자, 휴학자는 지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3. 가족, 친·인척 등 특수 관계에 의한 추천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